

3차

안동환경운동연합
14차

(사)안동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ong

36673.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5 TEL 843-9333

· 일 시 2024년 2월 7일(수) 18:30 · 장 소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총회 전 행사

- 2023년 활동사진
- 우수회원상 시상(김현주, 신기선) 조영준 공동의장

(사) 안동환경운동연합 총회

- 개 회 선 언(개회사) 김수동 상임의장
- 성 원 보 고 서옥림 사무국장
- 서 기 지 명 김수동 상임의장
- 안 건 처 리
- 안건 1-1. 감사보고서 승인
- 안건 1-2. 2023 사업보고서 승인
- 안건 1-3. 2023 회계보고서 승인
- 임시의장 선출 김수동 상임의장
- 안건 2. 임원 및 집행위원 선출(안) 임시의장
- 안건 3-1. 2024년 사업계획(안) 신임 상임의장(이사장)
- 안건 3-2. 2024 예산(안)
- 기타 안건
- 폐 회 상임의장
- 부록 1. (사)안동환경운동연합 정관

■ **안전 1-1. 감사보고**(다음과 같이 감사를 보고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안동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6조 ③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2023년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감사 일시 : 2024년 1월 25일 오후 1시

□ 감사 장소 :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감사 내용 : 1) 2023년 사업 전반.

2)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 감사의견

1) 사업부분

2023년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별문제가 없었으며 각종 사업에 회원들의 참여가 예년에 비해 높아진 편이어서 고무적임. 앞으로도 이런 기류를 이어가면 좋을 듯하나 다만, 탈퇴한 회원이 많은 점은 아쉽다하겠습니다.

2) 회계부분

2023년 총 수입 72,434,723원과 총 지출 48,368,188원(잔액 24,066,535원)의 수지내역에 이상이 없었으며, 각종 증빙자료와 통장 잔액 일치하였음.

3) 감사 총평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바 문제점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대응에 다방면으로 집중하였으며, 선행지 견학(장항제련소)을 통한 대책위, 타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등)와의 네트워킹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자연복구 운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지역 내 많은 단체(안동환경교육센터, 전교조안동지회, 안동시민연대, 안동환경교육센터 등)와의 협업으로 영화제와 강연회에 많은 안동시민들이 참여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반대 시의회 결의 제안을 하여, 성과를 이끌어 내었고, 핵오염수 투기 저지 안동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집회 참석, 귀경 캠페인 등을 했으며, 현재도 대시민

피켓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후원회원 가입이 이어졌지만,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이 늘려 안정적인 예산 확충으로 지역 환경운동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내용으로 감사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안동환경운동연합 감사 류시대 

기본자산 이자: 7,483원

계좌번호	351-1218-3646-33	예금종류	보통예탁금
예금주명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현재통장잔액	15,013,359
조회기간	2023/01/01 ~ 2023/12/31	현재지급가능잔액	15,013,359

●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2023/12/24 10:52:07		3,742	15,013,359	예금이자		농협 707015	
2023/06/25 09:24:29		3,741	15,009,617	예금이자		농협 707015	

운영: 6,604,743원

계좌번호	351-1213-1935-23	예금종류	보통예탁금
예금주명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현재통장잔액	4,559,877
조회기간	2023/01/01 ~ 2023/12/31	현재지급가능잔액	4,559,877

●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2023/12/28 14:54:15		684,637	6,604,743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000733	

퇴직적립금 이자: 466원

계좌번호	351-1218-3606-53	예금종류	보통예탁금
예금주명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현재통장잔액	1,403,545
조회기간	2023/01/01 ~ 2023/12/31	현재지급가능잔액	1,403,545

●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2023/12/26 13:31:50		61,000	1,342,54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12/24 10:53:09		280	1,281,545	예금이자		농협 707015	
2023/11/27 13:20:07		61,000	1,281,26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10/26 10:22:35		61,000	1,220,26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09/25 14:44:44		61,000	1,159,26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08/25 11:15:12		61,000	1,098,26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07/25 11:08:03		61,000	1,037,26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06/26 14:38:01		61,000	976,26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	농협 707015	
2023/06/25 09:49:13		186	915,265	예금이자		농협 707015	

파타고니아 후원금: 15,684,915원

계좌번호	301-0321-1145-71	예금종류	보통예금
예금주명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현재통장잔액	15,300,755
조회기간	2023/01/01 ~ 2023/12/31	현재지급가능잔액	15,300,755

●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2023/12/28 14:54:15	684,637		15,684,915	인터넷당행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 연 사단법인	농협 000733	

후원금: 1,768,928원

계좌번호	351-1218-3671-93	예금종류	보통예탁금
예금주명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현재통장잔액	3,520,501
조회기간	2023/01/01 ~ 2023/12/31	현재지급가능잔액	3,520,501

●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이체메모
2023/12/29 09:30:42	8,450		1,768,928	CMS공동	관리청수수료	농협 707015	

잔액 총 합: 24,066,535원

■ 안건 1-2. 2023 사업보고

(다음과 같이 2023년 사업을 보고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이슈 대응

▶ 기후위기

- '기후정의학교'를 기획하여 강연회(한재각, '기후정의' 저자, 2022 기후위기공부모임 후속)를 진행 40명 참석, 후속 활동으로 '414 기후정의파업(세종)'에 17명 참여.

- '기후위기를 마주하는 여름'이라는 주제로 '수라 상영회(황윤감독초청)'와 '기후강연회(홍종호 교수초청)'를 기획하고 '923 기후정의 행진'에 26명 참여.

- 기후정의경북행동 출범, 현황 대응과 기후위기 대응논의 체계 마련.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시의회 결의촉구 안동시청 앞 1인시위 4차 진행, 시의회 결의 이끌어냄.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도의회 결의촉구 경북도청 앞 1인시위 5차 진행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안동 퇴근캠페인(매일, 격주) 신시장네거리 78차 진행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참여, 서울 6차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연대 일본방문, 일본 경제산업성 앞 항의 시위, 경북도청 앞/김형동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등 다수의 긴급집회와 정기/귀경캠페인, 기자회견 진행

- 오염수저지공동행동(전국 단위, 지역 단위) 참여

▶ 4대강 복원 운동(낙동강 유역 시민단체와 모니터링 및 보 개방/철거 운동)

- 낙동강 녹조 독소 농산물 규탄 기자회견(국민성토대회)

- 425 생명의강 3천인 선언대회

- 내성천 별목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현장조사

- 문수스님 13주기 추모제

▶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 옥시 불매 캠페인

▶ 학교 석면문제 언론 대응(보고서 보도자료 배포) 등

▶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공론장

▶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폐 규탄 전국공동행동

▶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촉구 전국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 지역 현안 대응

- ▶ (주)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대응
 - 낙동강상류(안동댐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 참여
 -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제련소 현장탐방, 생태탐방
 -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비소중독 사망 규탄 기자회견
 - 영풍석포제련소 규탄 퍼포먼스

▶ 지역현안 대응

- 안동댐 녹조 모니터링 및 안동MBC인터뷰

□ 기타연대

▶ 안동시민연대

- 고.김창환 선생님 10주기 추모제
- 시국선언 기자회견
- 세월호참사 9주기 추모사업
- 43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행사
-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취임반대 집회

▶ 안동YWCA

-‘바른 분리수거-신나는 불편운동’ 환경교육, 거리 캠페인, 성과공유 및 차년도 사업계획 간담회

▶ 안동시 농민회 후원일일찾집

▶ 천주교안동교구 친일매국 검찰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회복을 위한 월요시국기도회

▶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1년간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준비, 시민보고회(버스타기 좋은 안동 녹색도시 안동)

▶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회원 및 시민 대상 활동

▶ 환경영화상영회(수라, 느티나무 아래)

▶ 정당, 지역아동센터, 나섬식생활교육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환경교육과 강연

▶ 생태탐방 5회 진행. 문경 돌리네습지, 안동시광역시매립장, 청송 성덕댐~백석탄지질공원, 새만금~장항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

▶ 미래교육 문화장터 체험부스 운영

▶ 월간 「함께 사는 길」 발송(2024.1 중간), 안동소식지는 지속할 예정.

■ 안건 1-3. 2023 재정보고

□ 수지결산

구분	금액
총 수입(2023)	72,434,723
총 지출(2023)	48,368,188
차감잔액(이월)	24,066,535 (-파타고니아 2024 지원금 14,963,152원 = 9,103,383)

□ 수입결산

구분	산출근거	금액(원)
이월금	전년도(2023)이월	5,134,628
회원회비	개인회비 (2023년 신규회원 40명, 총 회비납부회원 195명.12/28 기준)	28,435,862
후원금	개인일시후원	200,000
	단체후원 및 기타수입 (열두광주리: 100,000, 상지여중고후원: 171,160, 환경운동연합 923행진 지원금: 500,000, 923행진 조직위 지원금: 200,000, 기안행 여행자보험: 89,650, 안동시민공회 환경분과: 50,000, 민주노총북부지부: 200,000, 기안행: 200,000, 안동시민연대: 200,000, 수라상영개인후원: 156,000, 흥종호강연개인후원: 202,000, 미래교육마을장터 체험부스 운영비: 400,000)	2,468,810
	기업후원 (엠와이소셜컴퍼니: 2,000,000, 파타고니아: 29,954,475)	31,954,475
기타	기타수입 (생태탐방 회비: 2,070,000, 812생명버스 후원: 920,000, 원전위험공익센터 임대수입: 200,000)	3,190,000
	잡이익	1,033,120
이자수입		17,828
계		72,434,723

□ 지출결산

비 목	항 목	산출근거(원)	금액(원)
인건비	사무국장	728,000 × 12개월	8,736,000
	퇴직급여적립	61,000 × 13개월	793,000
	사회보험료		92,680
	소계		9,621,680
관리유지비	사무실임대료	260,000 × 6개월+310,000 × 6개월	3,420,000
	세금과 공과금	인터넷,전기,전화 등	613,730
	지급수수료	회계수수료, 금융결제원, MRM, CMS수수료 등	3,201,000
	소계		7,234,730
운영비	기타운영비	생수, 쓰레기봉투 등	118,160
	소모품비	문구류, 카트리지, 비품 등	459,460
	소계		577,620
전국분담금	전국분담금비용	73,130 × 3개월+75,671 × 9개월	900,429
	소계		900,429
사업비	국토생태	기타인건비: 8,638,400 활동비: 2,967,247 도서인쇄비: 280,500 물품구입비: 277,220 홍보선전비: 1,610,000 기타운영비: 114,350	13,887,717
	탈핵에너지기후변화	활동비: 1,672,762	1,672,762
	생활환경	활동비: 99,500	99,500
	환경교육	기타인건비: 100,000 도서인쇄비: 97,000 회의비: 477,100 물품구입비: 5,250 기타운영비: 1,500	680,850
	조직 및 정책	기타인건비: 200,000 활동비: 30,100 회의비: 920,000 홍보선전비: 50,000 기타운영비: 1,121,000	2,321,100
	미디어홍보	홍보선전비: 100,000	100,000

	회원 및 모금	기타인건비: 353,000 활동비: 5,609,020 도서인쇄비: 3,444,000 홍보선전비: 280,850 기타운영비: 1,584,930	11,271,800
	소계		30,033,729
계			48,368,188

■ 안건 2. 임원 및 집행위원 선출

□ 2024년 임원 및 집행위원 선출(안)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상임의장(이사장)	집행위원	김수동	2024~2026	선출직
공동의장(이사)	집행위원	최형석	2024~2026	선출직
이사(집행위원)		박명남	2024~2026	선출직
이사(집행위원)		조영준	2024~2026	선출직
사무국장(상근이사)	집행위원	서옥림	2024~2026	임명직
감사		류시대	2024~2026	선출직
감사		이해선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강병두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김아름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김윤진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김은영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이재각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전교탁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조석옥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최병우	2024~2026	선출직
집행위원		한철희	2024~2026	선출직

■ 안건 3-1. 2024년 사업계획(안)

다음과 같이 2023년 안동환경운동연합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전국이슈 대응

-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안동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개인 및 단체 실천을 제안하며 지자체나 정부에 관련 정책 제안)
- ▶ 탈핵운동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SMR 반대,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등)
- ▶ 4대강 재자연화 운동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와 모니터링 및 보 개방/철거 운동)
- ▶ 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 대응

□ 지역 현안 대응

- ▶ (주)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대응
- ▶ 안동댐/임하댐 중금속 및 녹조 등 수질오염 감시
- ▶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갈등 대응
- ▶ 기타 긴급 지역현안 대응(화학사고 등)
- ▶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간의 현안 공유 및 공동대응
- ▶ 지역 내 종교계 및 환경시민단체와 연대 강화

□ 일상활동

- ▶ 집행위원회(월 1회), 총회(연 1회), 사무국 회의(주 1회)
- ▶ 조직 사업(회원확대/교육/소모임 활동)
- ▶ 홍보 활동 강화(회원 관리, SNS를 담당하는 회원, 소식지 편집위원회, 콘텐츠 제작)

□ 회원 및 시민 대상 활동(방역 상황에 맞춰서 진행)

- ▶ 환경영화제(환경영화 선정 후 중앙시네마를 거점으로, 연 1회)
- ▶ 환경강연(기후 위기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주제로, 연 1회)
- ▶ 지역 생태 탐방 활동
(오염 및 훼손지 또는 보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연 5회)

□ 2024년 중점사업

- ▶ (주)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대응
(피해자 조직, 민사소송, 환경오염피해구제신청, 조건부 감시활동)
- ▶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안동비상행동 간사단체로 안동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직)

■ 안건 3-2. 2024년 예산(안)

□ 수입예산

구분	산출근거	금액(원)
이월금		9,103,383
회원회비	2,300,000 × 12월	27,600,000
후원금(파타고니아)		14,963,152
광역지원기금배분		1,000,000
기타수입(생태탐방)	100,000 × 5월	500,000
기타	잡이익,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620,000
계		53,786,535

□ 지출예산(안)

항목	비 목		산출내역	금액 (단위:월)
운영비	인건비	급여(사무국장)	12월 × 1,000,000	12,800,000
		사회보험	12월 × 15,000	180,000
		퇴직적립	12월 × 75,000	900,000
	관리유지비	사무실 월 임대료	12월 × 310,000	3,720,000
		공과금(인터넷,전기,전화 등)	12월 × 70,000	840,000
		회계사 위탁 비용	12월 × 148,500	1,782,000
		MRM 비용	12월 × 44,000	528,000
		금융결재원	12월 × 44,000	528,000
		관리점수수료	12월 × 25,000	300,000
	소모품 및 사무용품		12월 × 50,000	600,000
	수선 총당금(수선 및 기타)			200,000
	지역분담금		12월 × 75,000	900,000
	소 계			23,278,000
사업비	국토생태		12월 × 1,300,000	15,600,000
	탈핵에너지기후변화			4,500,000
	생활환경			800,000
	환경교육			2,200,000
	조직 및 정책			1,000,000
	미디어홍보			1,300,000
	회원 및 모금(생태탐방, 소식지 등)		5번 × 200,000+ 12월 × 300,000	4,600,000
	소 계			30,000,000
예비비	예비비			508,535
총계	총 계			53,786,535

<부록> 1.

(사) 안동환경운동연합 정관

전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2월 2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강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여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로 못 생명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를 창립하여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2018년에는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에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재창립하여 지역 내에서 환경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활동해오다가 2021년 11월 29일,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보다 책임 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으로 체제를 바꾸고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이하 “본 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 Andong (약칭 “Andong KFEM”)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45, 1층(태화동)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은 생명·평화·참여·연대를 중심 가치로 삼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 민주사회를 만들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환경문제해결에 힘쓴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8.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가입절차 및 구분)

- ① 본 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본 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로 한다.
- ③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본 연합의 정회원은 당해연도 회비(총회 직전일 이전 1년)를 연속 4개월 이상 납부한 자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본 연합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의견 개진을 통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준회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합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 연합의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사무국장)
3. 이사 5~7인(이사장 및 상근이사(사무국장)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합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근이사(사무국장))

- ① 본 연합의 사무국장은 상근이사를 겸직한다.
- ②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본 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와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 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연합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본 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출석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서면 혹은 사무국 사용 이메일이나 문자로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합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집행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상근이사(사무국장)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 회원총회 개시 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 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및 조직

제30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32조(집행위원회)

- ① 본 연합의 사업을 주관하는 상설 집행기구로 당연직과(이사, 사무국장) 선출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 ②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합의 사업 집행을 위한 논의.
 2. 지도위원, 전문위원 위촉.
 3. 위원회 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위임 사항 집행.
- ⑤ 집행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국)

- ①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상근이사(사무국장)가 총괄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 시, 발기인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7조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 연합의 수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 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기부금 결산) 본 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사무국장)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5조(정치활동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46조(법인해산)

①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후, 날인한다.

제정: 2021년 11월 29일 창립총회

1차 개정: 2023년 2월 14일 제2차 정기총회 - 명칭, 소재지, 가입절차 및 구분, 회원의 권리, 상근이사(사무국장), 의결정족수, 구분 및 소집, 집행위원회, 회계감사 개정